

대신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 제35조2에 근거한 대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기구는 대신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장 조 칙

제 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인
2. 직원 - 2인
3. 학생 - 1인
4. 동문 - 2인
5.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제 4조(위촉) 평의원의 위촉은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추천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원우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 5조(임원)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7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장 회 의

제 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10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1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4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 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위원회

제 18조(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제 19조(개방이사 및 개방 감사추천)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은 법인 정관 제24조2항 내지 4항에 의거 선출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보 칙

제 20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1조(내규) 평의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22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대신대학교 개방이사 규정]

대신대학교 개방이사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법인 정관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중 제24조 2에서 24조 5에 개방이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 3장 기 관 제 1절 임 원

제 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9인(2011. 9. 14 개정)
2. 감 사 2인(2008. 2. 18 개정)

제 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2008. 2. 18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3조의2(임원의 자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소속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2008. 2. 18 개정)

제 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2008. 2. 18 개정)

② 삭제 (2008. 2. 18 개정)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008년 8월 12일 재 준치)

제 24조의 2(개방이사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 경영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 소속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2008. 2. 18 신설)

제 24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는 3명으로 한다.(2010. 9. 28 개정)

제 24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2008. 2. 18 신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2008. 2. 18 신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2008. 2. 18 신설)

제 24조의 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2008. 2. 18 신설)

②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 2. 18 신설)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08. 2. 18 신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8. 2. 18 신설)